#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5년 06월 20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2-898-5007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경기도 안양시 거주자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	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성	당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 (과밀억제권역)	없음	미적	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06.20.(금)	25.06.30.(월)	25.07.01.(화)	25.07.02.(수)	25.07.08.(화)	25.07.11.(금) ~ 25.07.14.(월)	25.07.21.(월) ~ 25.07.23.(수)

#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 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관련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내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 02-898-5007)을 실시하고 있으나, 문의전화 폭주로 인하여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따른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 유선상담 한계 등에 따라 청약관련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관련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ルシエフ			일반공급				
신청자격	기관추천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실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계	히금 충족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_	_	_	_	_		
소득 또는 자산기준	-	_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 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 청약접수일과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 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기준 주택 소유로 간주함(\*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함)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간주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b>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b>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b>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b>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i-park.com./hohyeoncentral)에 공개하며, 공개기 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기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 따라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법」제65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동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이 이미 제3자에 전매된 경우 분양권 매수자는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그 외 지역 모두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되며 입주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금융	네이버	KB국민	토스	신한	카카오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APT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			0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6.20.(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안양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는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5.06.30.(월)	25.07.01.(화)	25.07.02.(수)	25.07.08.(화)	25.07.11.(금) ~ 25.07.14.(월)	25.07.21.(월) ~ 25.07.23.(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		■ (PC·모바일) 청약홈	■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 견 (주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합니다. (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합니다.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지역, 비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안양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

-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도시정비과 -10223호 (2025,06,2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111-1번지 일원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2~29층 7개동 총 507세대 중 일반분양 144세대

[특별공급 77세대(기관추천 13세대, 다자녀가구 14세대, 신혼부부 33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1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ᄌᄄ		T CU 등)		주	백공급면적(	m²)	기타	HOE	UIFUH	*27			특별공급	<b>  세대수</b>			OIHLTT	최하층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일반공급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01	055.9880	55	55.9880	18.7167	74.7047	44.7875	119.4922	28.2745	2	1	_	_	_	_	1	1	2
0005000040	02	059.9915	59	59.9915	20.1140	80.1055	47.9901	128.0956	30.3186	140	12	14	32	4	13	75	65	6
2025000246	03	084.9982	84	84.9982	27.3830	112.3812	67.9941	180.3753	42.5345	2	-	_	1	_	_	1	1	_
					합 계					144	13	14	33	4	13	77	67	8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는 총 공급 세대(144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 ■ 공급금액 및 납부일

(단위: 세대, 원)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ł(60%)			잔금 (30%)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호구분	구분(층)	해당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1차	2차	1회 (10%)	2회 (10%)	3회 (10%)	4회 (10%)	5회 (10%)	6회 (10%)	입주지정일
	**11=11 1			**11-11 1	네시미	건국미	승급급액	계약 시	2025.08.21	2025.11.25	2026.02.25	2026.05.25	2027.05.25	2027.08.25	2027.11.25	입무시성일
55		1005 1 05	1층	1	264,654,000	315,346,000	580,000,000	29,000,000	29,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174,000,000
55	2 102동 1,2호	2층	1	277,886,700	331,113,300	609,000,000	30,450,000	30,45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182,700,000	
			2층	6	305,629,740	364,170,260	669,800,000	33,490,000	33,490,000	66,980,000	66,980,000	66,980,000	66,980,000	66,980,000	66,980,000	200,940,000
			3층	13	307,044,270	365,855,730	672,900,000	33,645,000	33,645,000	67,290,000	67,290,000	67,290,000	67,290,000	67,290,000	67,290,000	201,870,000
			4층	13	317,539,170	378,360,830	695,900,000	34,795,000	34,795,000	69,590,000	69,590,000	69,590,000	69,590,000	69,590,000	69,590,000	208,770,000
			5층	12	327,121,470	389,778,530	716,900,000	35,845,000	35,845,000	71,690,000	71,690,000	71,690,000	71,690,000	71,690,000	71,690,000	215,070,000
			6층	15	332,597,070	396,302,930	728,900,000	36,445,000	36,445,000	72,890,000	72,890,000	72,890,000	72,890,000	72,890,000	72,890,000	218,670,000
			7층	15	334,422,270	398,477,730	732,900,000	36,645,000	36,645,000	73,290,000	73,290,000	73,290,000	73,290,000	73,290,000	73,290,000	219,870,000
		101동 1,2,3,4호 102동 1,2,3,4호	8층	15	336,247,470	400,652,530	736,900,000	36,845,000	36,845,000	73,690,000	73,690,000	73,690,000	73,690,000	73,690,000	73,690,000	221,070,000
59	140	102등 1,2,3,4호 104동 3,4,5호	9층	15	338,072,670	402,827,330	740,900,000	37,045,000	37,045,000	74,090,000	74,090,000	74,090,000	74,090,000	74,090,000	74,090,000	222,270,000
59	140	106동 1,2호	10층	13	339,897,870	405,002,130	744,900,000	37,245,000	37,245,000	74,490,000	74,490,000	74,490,000	74,490,000	74,490,000	74,490,000	223,470,000
		107동 1,2호	11층	11	341,723,070	407,176,930	748,900,000	37,445,000	37,445,000	74,890,000	74,890,000	74,890,000	74,890,000	74,890,000	74,890,000	224,670,000
			12층	4	343,548,270	409,351,730	752,900,000	37,645,000	37,645,000	75,290,000	75,290,000	75,290,000	75,290,000	75,290,000	75,290,000	225,870,000
			13층	3	345,373,470	411,526,530	756,900,000	37,845,000	37,845,000	75,690,000	75,690,000	75,690,000	75,690,000	75,690,000	75,690,000	227,070,000
			14층	1	346,742,370	413,157,630	759,900,000	37,995,000	37,995,000	75,990,000	75,990,000	75,990,000	75,990,000	75,990,000	75,990,000	227,970,000
			20층	1	351,305,370	418,594,630	769,900,000	38,495,000	38,495,000	76,990,000	76,990,000	76,990,000	76,990,000	76,990,000	76,990,000	230,970,000
			24층	1	351,305,370	418,594,630	769,900,000	38,495,000	38,495,000	76,990,000	76,990,000	76,990,000	76,990,000	76,990,000	76,990,000	230,970,000
			25층	2	351,305,370	418,594,630	769,900,000	38,495,000	38,495,000	76,990,000	76,990,000	76,990,000	76,990,000	76,990,000	76,990,000	230,970,000
0.4		103동 3호	2층	1	463,190,130	551,909,870	1,015,100,000	50,755,000	50,755,000	101,510,000	101,510,000	101,510,000	101,510,000	101,510,000	101,510,000	304,530,000
84	2	105동 2호	15층	1	506,538,630	603,561,370	1,110,100,000	55,505,000	55,505,000	111,010,000	111,010,000	111,010,000	111,010,000	111,010,000	111,010,000	333,030,000

#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 주택형	055.9880	059.9915	084.9982
약식표기	55	59	84

#### ■ 공통 유의사항

- 청약 시 주택형과 약식표기를 확인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동출입구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은 기타공용면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외벽면적 제외)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외벽면적 제외)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증감 비율이 허용오차범위 내에서 변동될 경우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하는 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 홍보물 등으로 대상 주택을 안내하오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청약(특별공급,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보관 후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화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자 판명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주택형별', '충별', '동별', '호수별' 차등 적용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일이 단축될 경우 공급대금 납부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축되는 입주예정일에 따라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 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의 측량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건물의 견본주택, 건축물의 배치구조,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보강토 블록, 조경용 석축 등 포함)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 보증 받은 아파트(공동주택)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V 특별공급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약식표기)		55	59	84	합계
		경기도	1	2	-	3
	장애인	서울특별시	-	1	_	1
		인천광역시	_	1	_	1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	2	_	2
7204	장기복무제대군	인	-	2	-	2
	10년이상복무군	-인	-	2	_	2
	중소기업근로	<b>다</b>	-	2	_	2
다자녀가구	경기도 거	주자(50%)	_	7	_	7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거주자		-	7	-	7
	신혼부부 특별공급			32	1	3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_	4
	생애최초 특별공급			13	_	13
	합 계		1	75	1	77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공통사항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베오다이 중이 저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b>배우자</b> 가 <b>혼인 전 당첨된 이력</b> 에 따른 <b>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b>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생애최초	- 작용횟수 제인 값음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b>혼인특례</b> 는 <b>본인 기준 1회</b> 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회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기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등답기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청약통장

자격요건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처리방법

모두 **부적격** 처리

구 분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2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IV-1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3세다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b> ■ <b>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b>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장애인 : 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b>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함 ■ <b>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b>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제3항)) ■ <b>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b>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지역 → ② 배점 → ③ 미성년 자녀수 → ④ 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 추첨 ■ ① 지역 : 해당지역(안양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3호(2024.03.25.)]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안양시 거주자 우선)하며, 나머지 주택(우선 공급에서 미달된 주택을 포함)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기도 거주자 포함) 거주자에게 공급 ※ 단,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기도 거주자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 ② 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MI 87		기준	점수	ol五
	계계	100			
			4명 이상	40	
<b>にトデ</b> リエ!	(1) 미성년 자녀수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2명	25	
7,998			3명 이상	15	
	(2) 영유아 자녀수	15	2명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1명	5	
	(3)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4) 무주택기간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 5년 미만	10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사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1년 이상 ~ 5년 미만	5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6) 입주자저축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b>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ul><li>■ 당첨자 선정 순서 :</li><li>■ ① 소득구분</li></ul>	① 소득구분 → ② 순위 → ③	) 지역 → ④ 미성년 자녀수 → ⑤ 추첨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당첨자 선정방법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 지역 → ④ 미성년 자녀수 → ⑤ 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안양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 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라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 <b>지역</b> : 해당지역	거주자(안양시 거주자) → 기티	지역 거주자(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고	■ <b>자녀기준</b>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 <sup>*</sup> 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 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 소득기준

####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6.20.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 <del>득구분</del>		소 <del>득금</del> 액					
소	≒↑₴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우선공급	부부 모두	100% 초과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0,040,374 <u>H</u>	~10,293,700편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205,313원~	8,578,089원~	9,031,049원~	9,733,087원~	10,435,125원~	11,137,163원~
신생아일반공급,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087,437원	12,009,323원	12,643,467원	13,626,320원	14,609,174원	15,592,027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8,646,375원~	10,293,707원~	10,837,259원~	11,679,704원~	12,522,150원~	13,364,595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부부 중 한 명만	140% 초과하나,	10 007 40091	12 000 22491	10 640 46091	10 606 001 91	14 600 1759	15 500 00091
중원고그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추첨공급	부부 모두	160% 초과하나,	11 520 500 91.	12 724 04291.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 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O (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건축물	- 건축물가(	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 건축물 종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택 외	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토지	단, 아래 * 「농지법 등재된 * * 「초지법 소재지오 * 공부상 . * 종중소유 입주(예?	경우는 제외 ,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경우 ,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 동일한 주소인 경우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 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	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 군복무 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년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b>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b>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b>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b>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b> 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b>1순위에 해당하는 분</b> - 청약통장 가입기간 <b>12개월</b>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ul>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지역 → ② 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li> <li>① 지역 : 해당지역(안양시) 거주자 → 수도권 거주자(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li> <li>② 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li> <li>-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li> </ul>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당첨자
선정방법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 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0명	5	4명	25
	٥٦	1명	10	5명	30
	35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 이즈되던중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③ 입주자저축	17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가입기간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 <u>으로</u>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비고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내용

# IV-5

구분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13세대

1 12	710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 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라, 만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 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전목세조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라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ul><li>■ 당첨자 선정 순서 :</li><li>■ ① 소득구분</li></ul>	① 소득구분 → ② 지역 → ③	추첨				
	단계	소 <del>득구분</del>	내용				
당첨자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선정방법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15%)		
		혼인 중이거나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C C L MI	주원고그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401.717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1인 가구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 **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안양시)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 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 소득기준

####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6.20.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A E 7 H				소득	금액		
	소득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 일반공급,	130% 초과	9,366,907원~	11,151,515원~	11,740,363원~	12,653,013원~	13,565,662원~	14,478,312원~
	일반공급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추첨공급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 711	160% 초과하나, 부동산기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 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 (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기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1516호(2024.03.25.)]에 따릅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 백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여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탁행상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이 예치금액 이상인 이상인 분	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4	F택형에 한함)			
청약통장	구 분	= =	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정	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자격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 지역 - 1순위 추첨제 : ① 지역 - 1순위 추첨제 : ① 지역 - 2순위 : ① 지역 → ② = ■ ① 지역 : 해당지역(안양시 ■ ② 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	→ ② 무주택자 우선공급 추첨  ) 거주자 → 기타지역(경							
당첨자		ā	분		가점제	추첨제			
선정방법		전용면적 60㎡ 이하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이	세 관한 규칙」별표1의2 L	<b>남</b> )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b>무주택기간</b>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크 미만	18		
	(リ) ナナツハン	٥Z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 부양가족수	,	35	1명		5명	30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3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③ 입주자저축		본인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 입기자식 가입기간	17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기합기간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ШОТ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배우자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1)

구 분	Ч 8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출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미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기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 ② **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성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	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 보는 경약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로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 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장소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 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접수: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1-1	<ul> <li>일시 : 2025.07.08.(화)</li> <li>확인방법</li>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li> <li>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ul>
일반	1순위	해당지역 : 안양시 거주자	2025.07.01.(화) 09:00~17:30	· '청약Home'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www.applyhome.co.kr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공급	기타지역 : 수도권 거주자 2순위	2025.07.02.(수) 09:00~17:30	-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274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	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7.08.(화) ~ 2025.07.17.(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청약홈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제공일시 : 2025.07.08.(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문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VII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안내

구분	접수 대상자	접수 일시	서류접수 장소					
내용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2025.07.11.(금) ~ 2025.07.14.(월)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110	(예비입주자 포함)	10:00~16:00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1-1)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 당첨자별로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 할 수	마소니크기 사이한 거인 단원이 키포크며, 버젼거 단원에 따르 넘이어야						
	· 선정자격에 맞는 제 등영지류(명점자 제출자류 점소)를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들 제물이어야 이며, 신청자의 직오 등으도 신청대용파 제	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제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서저되 경우 저스의로보다 되면 되어 되었다. 되었다면 해당 기간의 경계하고 나면 베기하니다.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주택법」제65조(공급	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지	가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배우	2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제출 서류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내 공통 서류와 당첨 유형별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발급기준 및 유의사항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원 1통)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 주택공급계약 체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 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공통서류 (예비입주자 포함)		0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비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배우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0	기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으로 당첨된 경우_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안양시)으로 당첨된 경우_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0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해당 주택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 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0		해외체류(단신부임)관련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등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도 인정 안됨
	0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0	주민등록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가점제		0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청약소통방 〉APT 당첨사실 조회
청약자		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기관추천 특별공급	0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_	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 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혼인 미성년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0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0		소득증빙서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0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견본주택 비치)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현재 배우자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특별공급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0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 비치)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0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 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 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였는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71710071(071)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TO C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H0t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여부 추가 확인을 위한 필수제출
				직계비속	-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굴합국사결증당면		※ 작게미속 구청가속 제외 사항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요양급여 내역	직계존속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국민건강보험	피부양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요양급여 내역	직계비속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0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업무지포함증권을 이후 물병분으로 성격한영지의 포력제 업무 합증지표   * 아래[생애최초 특별공급 증빙서류] 참조
	0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되었을 시 소득금액증명의 총 결정세액이 "O"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가능
					*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_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본인 및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만19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생애최초	소득증빙서류	이상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특별공급				세대원 전원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0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견본주택 비치)
					   ·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201-2(2 1-2)	직계존속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중이고:게즈면 녀/사네\	피부양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인정받고자 할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진단서	HOLEE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배우자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 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0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 비치)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부적격 통보를		0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 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받은자		0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0		인감증명서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제출 시 추가 서류 (본인외 모두	0		인감도장	본인	· 공급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
	0		위임장	본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제3자)	0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지속적인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 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의 연봉 및 근로계약서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홈택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	① 재직증명서 ② 소득금액증명원 ③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 재직증명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②, ③ 해당직장, 세무서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홈택스
자 영 업 자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가입자만 인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③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②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 ⑤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② 세무서, 해당직장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 ①,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행정복지센터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전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농업인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 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sup>※</sup>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등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sup>※</sup>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sup>※</sup>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인해 전년도 소득관련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으며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신청 원칙으로 인터넷신청 청약자 중 당첨자에 한하여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2020.09.2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구 분	해당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ol> <li>해당직장, 세무서</li> <li>국민건강보험공단</li> <li>세무서</li> <li>정부24</li> </ol>	
자격 입증서류	자영업자 / 농업종사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④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 납부자)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 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종합소득세 납부자: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서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세무서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www.iros.go.kr) ③ 행정복지센터
있는 경우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특별시: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특별시 外 지역: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②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추가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해당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자치단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과세증명서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 전국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력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sup>※</sup>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VIII

### 계약체결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체결	계약체결 장소
정당 당첨자 (일반공급/특별공급)	2025.07.21.(월) ~ 2025.07.23.(수), 3일간 (10:00~16:00)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1-1)

<sup>※</sup>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 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당첨 효력 상실)
-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합니다.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관리계좌(계약금 1차)	VD Z III O ≅II	209701-04-520867	나라이피트캠키구컨베니어그룹(이 4이)
분양대금 관리계좌(계약금 2차, 중도금, 잔금)	KB국민은행	계약체결 시 세대별 개별계좌부여(가상계좌)	신한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외 1인)

- ※ 분양대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와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301호 계약자 → '1010301홍길동')
- ※ 계약금 2차,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 시 부여되는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 하여야 하며,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모계좌로 입금되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가상계좌는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자격검증서류	_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추가 개별통지 서류	_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_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공통 서류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원 1통)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 주택공급계약 체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서류접수 기간 내 제출하신 분 추가 제출 필요 없음

	인지세 (정부수입인지)	본인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동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발급 ※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연대하여 균등 납부 ※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주택취급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수도권 내 6억 초과 주택거래 시 의무 제출
부적격 통보를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받은 경우	당첨사실 소명서류	_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신청 시	위임장	본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 주택에 비치)
추가사항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비서류의 제출은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계약 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내용
12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유의사항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 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한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분양계약자가 계약금 2차, 중도금 또는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납부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아래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은 거소요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2024.01.01. 개정된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 납부 하기로 합니다.
- ·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분양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계약자 분담분)를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납부방법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분양계약자 분담분 납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간 특별공급 및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대한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보다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한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혼인특례 및 출산특례 적용시 제외)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임을 증명하는 경우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사업주체 비치)" 작성을 통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 분양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대출기관의 대출 기준 변경, 대출기관 미확보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이자후불제 조건이 적용되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 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의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 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 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입주개시월의 이자납입일까지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입주개시월의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 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 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 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시행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IX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발코니 확장 공사비 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조태왕(아니파기)	바그나 하다 고내비	계약금(10%)	잔금(90%)	ш¬
주택형(약식표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 시	입주지정일	비고
55	15,900,000	1,590,000	14,310,000	
59	16,600,000	1,660,000	14,940,000	
84	19,900,000	1,990,000	17,910,000	

-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약금 계좌로 계약 동·호수와 계약자명을 기재하고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증은 계약 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301호 계약자 → '1010301홍길동')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지정일자에 입금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작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관리계좌(계약금, 잔금)	KB국민은행	209701-04-529170	신한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외 1인)

###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자료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등기구, 배선기구의 사양, 수량 등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일부 실 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색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샤시는 사업승인변경 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주기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발코니 변화층의 경우 발코니 변화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등)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 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 시공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게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 확장 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는 확장 시 제공품목 등 구성과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 견본주택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 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 확장 세대가 발생할 경우 비 확장 세대에 단열재 및 조적벽체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 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Χ

# 추가 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시 선택가능)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주택형 (약식표기)		선택사항	설치	l대수	설치장소	금액	비고
	OIHIM		전체	4 <b>C</b> H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6,660,000	
55	일반형 실내기	GRILL TYPE	기본	2대	거실 + 안방	3,720,000	LG전자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고기처자 CDUL TYPE	전체	4대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7,860,000
		공기청정 GRILL TYPE	기본	2대	거실 + 안방	4,320,000
		CDILL TYPE	전체	4대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7,570,000
	고급형	GRILL TYPE	기본	2대	거실 + 안방	4,190,000
	실내기	고기하다 CDUL TYPE	전체	4대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9,160,000
		공기청정 GRILL TYPE	기본	2대	거실 + 안방	4,990,000
		CDILL TYPE	전체	4대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6,740,000
	일반형	GRILL TYPE	기본	2대	거실 + 안방	3,940,000
	실내기	7777 000 700	전체	4대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7,930,000
F0		공기청정 GRILL TYPE	기본	2대	거실 + 안방	4,540,000
59		CDILL TYPE	전체	4대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7,670,000
	고급형	GRILL TYPE	기본	2대	거실 + 안방	4,420,000
	실내기	고기한터 CDUL TVDE	전체	4대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9,260,000
		공기청정 GRILL TYPE	기본	2대	거실 + 안방	5,220,000
			전체	6대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9,780,000
		GRILL TYPE	전체	5대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주방특화형)	8,480,000
	일반형		기본	3대	거실 + 주방 + 안방	5,380,000
	실내기		전체	6대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11,58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5대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주방특화형)	9,970,000
0.4			기본	3대	거실 + 주방 + 안방	6,280,000
84			전체	6대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11,140,000
		GRILL TYPE	전체	5대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주방특화형)	9,610,000
	고급형		기본	3대	거실 + 주방 + 안방	6,070,000
	실내기		전체	6대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13,530,000
		공기청정 GRILL TYPE	전체	5대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주방특화형)	11,610,000
			기본	3대	거실 + 주방 + 안방	7,270,000

# 가전·기구 선택품목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적 <del>용품목</del>	구성 및 모델	판매가	비고
전 주택형	빌트인 냉장고	BC4S1AA1 + BC3K1AA1	5,700,000	LG전자

	BC1L2AA + BC1F2AA + BC1K3AA	5,10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RSK221JVPL/R	1,300,000
식기세척기	DIE6PT	1,450,000
식기세식기	DUE5NSE	1,190,000
건기크다	인덕션 2구 + 하이라이트 1구(BEY3GSBI)	850,000
전기쿡탑 (3구 쿡탑)	블랙 인덕션(BEI3ASB4BI)	1,050,000
(OT 考证)	화이트 인덕션(BEI3ANHLBI)	1,200,000
렌지후드(노출형)		580,000

인테리어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상품명	세부내용	판매가	제조사
84	중문(현관)	비대칭스윙도어	1,580,000	
59	THE	침실2 드레스룸특화	7,700,000	
84	평면특화	주방 더블팬트리	4,390,000	
55		확장기본형	1,120,000	
59		확장기본형	1,210,000	동화자연마루
59	마루(국산)	평면옵션형	1,220,000	
84		확장기본형	1,760,000	
84		평면옵션형	1,780,000	
55			510,000	
59	현관특화	현관 방화문 시트판넬	510,000	
84			500,000	
59	주방 스타일링업	플랩장	1,950,000	
84	(주방엔지니어드스톤 및 주방 세라믹타일 선택 시 가능)	PET장+플랩장(평면특화(주방 더블팬트리) 선택시 가능)	3,200,000	
55			1,190,000	
59	보조주방하부장	보조주방 수납공간 특화	1,190,000	
84			1,400,000	
55		확장기본형	1,830,000	
55		확장기본형 + 보조주방하부장	1,890,000	
59		확장기본형	1,500,000	
59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	확장기본형 + 보조주방하부장	1,560,000	
59		주방상부장특화	2,670,000	
59		주방상부장특화 + 보조주방하부장	2,730,000	

84		확장기본형	1,670,000	
84		확장기본형 + 보조주방하부장	1,770,000	
84		평면특화형	1,780,000	
84		평면특화형 + 보조주방하부장	1,890,000	
84		평면특화형 + 주방상부장특화	2,910,000	
84		평면특화형 + 보조주방하부장 + 주방상부장특화	3,020,000	
55		확장기본형	6,980,000	
55		확장기본형 + 보조주방하부장	7,800,000	
59		확장기본형	6,160,000	
59		확장기본형 + 보조주방하부장	6,990,000	
59		주방상부장특화	8,380,000	
59	주방 세라믹타일	주방상부장특화 + 보조주방하부장	9,210,000	
84	(벽+상판)	확장기본형	8,110,000	
84		확장기본형 + 보조주방하부장	9,100,000	
84		평면특화형	8,820,000	
84		평면특화형 + 보조주방하부장	10,170,000	
84		평면특화형 + 주방상부장특화	9,820,000	
84		평면특화형 + 보조주방하부장 + 주방상부장특화	11,240,000	
55		확장기본형	10,180,000	
59		확장기본형	9,780,000	
59	거실 아트월 (세라믹+판넬)	평면특화형	9,850,000	
84	(세다락+건글)	확장기본형	9,200,000	
84		평면특화형	7,640,000	
75	~ HUI7W7 H , A 권	수전(파포니락-RO285CR)	780,000	JUIC
공통	주방사각싱크볼+수전	수전(파포니라이트−LIG179CRNO)	1,080,000	리바트
55		확장기본형	6,550,000	
59		확장기본형	6,460,000	
59	조명특화	평면특화형	6,510,000	
84		확장기본형	7,320,000	
84		평면특화형	7,020,000	
공통	욕실비데	TCB-7000(2개소)	1,100,000	보보

## ■ 추가 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 비용은 아파트 공급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자재, 공사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현장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의 관리문제(발주 및 설치)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합니다. (추가 품목계약 시 계약 가능기간 안내)
- 상기 제품의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 단종 (제품의 품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 후 신모델 출시 시 동제조사의 동급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 시 동급 이상의 타 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음)
-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미선택 시,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벽타일 등)와 관련하여서는 견본주택에서 실 마감재 샘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제공하는 가전제품 옵션 목록은 추후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구 형태 및 가전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옵션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품목적용 및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적용 및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가구 옵션. 마감 옵션. 조명 옵션 미 선택시에는 기본 설계대로 시공됩니다.
- 옵션 내 간접조명이 포함되는 경우 배관·배선·안정기 설치 등으로 인하여 가림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간접조명의 크기와 깊이, 등기구 사양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주택형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상품구성 및 디자인, 제품모델,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 추가 선택품목에 관한 상세내용 중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추후 추가선택 품목 계약 시 별도의 안내 후 계약 진행합니다.(가전 및 기타 유상옵션 품목은 별도안내 예정입니다.)
-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정확한 일자, 추가 유상선택품목 및 납부계좌 등은 추후 통보함)

# XI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공통사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옥외안테나 : 옥상층(101동, 105동, 106동)     - 중계장치 : 옥상층(101동, 105동, 106동), 지하1층(휀룸), 지하2층 (휀룸)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 시설물의 위치와 형태, 크기,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단지 내 조경식재(수종, 식재 위치), 시설물(형태, 재질, 색채, 위치, 종류), 포장(선형, 패턴, 재료 등)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수경, 공간계획, 보·차도 포장패턴, 포장선형)은 현장 여건, 측량결과, 각종 인허가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여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조경 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포장 패턴 등)은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시설 등의 추가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총분히 비교 검토 후에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합스위치, 스마트스위치,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ㆍ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 등의 위치 및 개수는 모델하우스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 시공과 무관하며, 본공사 시에는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되어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모형의 조경시설물, 식재, 포장 패턴 및 동선의 선형,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 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양홍보물 ·공급 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단지 모형도, 전시물의 CG(컴퓨터 그래픽) 등은 ㆍ각종 광고, 홍보유인물(홍보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현된 식재, 포장패턴 및 동선의 선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상 1~2층(필로티 포함) 및 최상층은 세대 내 방범을 위하여 방범감지기가 설치됩니다. ·옥외 보안등 및 지하/지상층 CCTV는 본공사 시 기능과 감시범위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인 택배함은 지하층에 코어별로 설치되며. 코어별 세대수에 따라 설치되는 수량 및 구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측벽에 낙뢰 예방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생활의 불편 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붕층 또는 옥탑 층에 의장용 구조물, TV 안테나, 경관조명, 피뢰침, 이동통신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생활의 불편 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ㆍ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될수 있으며 일부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설계 및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내·외부여건 ·loT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인터넷이 가능한 어떤 사업자도 가능하며,입주자 별도 가입 필요)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세대에 IoT 서비스를 이용한 홈네트워크 기기제어(월패드 터치스크린 및 스마트폰용 홈네트워크 APP을 이용한 제어 범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시부터 사용 가능하며, IoT운영사의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홈네트워크 서버 유지보수 비용은 준공 후 3년간 무상지원 됩니다. 단,IoT 및 기타 서비스이용을 위한 단지내 홈네트워크 서버 인터넷회선비용은 준공 후 1년간 무상지원 됩니다. ·스마트홈 IoT 가전제품 연동 제어 범위는 홈 IoT 서비스 제공사와 제휴된 가전제품에 한합니다.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보·차도 포장패턴, 포장선형)은 현장여건, 측량결과, 각종 인허가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ㆍ시공 여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조경 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포장패턴 등)은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크기, 수량 등은 심의과정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일부 조경계획 이 변경될 수 있다.
- ㆍ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 시공 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ㆍ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ㆍ단지 내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수거시설 등과 인접하는 세대는 이용소음,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상부는 옥상녹화가 계획되어 있으며, 개인적인 접근 및 이용이 불가합니다.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 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도로 등의 경사로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되거나 옹벽 또는 조경석 등이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 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에는 조경식재 및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므로 세대 프라이버시 확보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및 마감재	<ul> <li>· 세대 내 공기질 감지센서(무선AP일체형)는 발코니 확장시 기본설치 품목입니다.</li> <li>· 세대 조명기구와 스위치는 직류전원(DC) 공급에 의해 동작하는 방식으로 조명기구와 스위치 간 UTP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류전원(AC)용 조명기구와 스위치로의 교체가 불가하므로 계약자는 이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에 문의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li> <li>· 세대별 옵션 선택에 따른 조명기구, 배선기구 및 기타 기구의 위치, 타입,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백체 및 바닥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li> <li>· 가스쿡탑 설치시 가스차단기, 전기쿡탑 설치 시 전기차단기, 전기+가스쿡탑제품(하이브리드) 설치 시(가스, 전기차단기)가 설치되며, 추가 설치 및 변경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방인터넷TV의 UI 및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주방인터넷TV는 WIFI 전용 모델로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은 입주민이 개별 구축하여야 합니다.</li> </ul>
주차장 및 기타공유시설	· 단지 내 분리수거장은 입주민용 4개소, 상가용 1개소 설치될 예정입니다.
부대복리시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휴게공간, D/A(설비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실, 필로티, 산책로 설치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 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XII

#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 「주택법」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입주자 사전방문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합니다.
- 사전방문 진행절차
-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도착 → ③ 접수, 교육안내 → ④ 입주자 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전 보수 및 보수사항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공동주택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입주예정월: 2028년 05월 예정 (정확한 입주 일자는 입주지정 개시일 1개월 전 통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의2에 따라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예정자들의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독서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어린이놀이터 등
- 부대복리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관리서비스의 A/S 센터로 일정기간 사용되며, 입주자는 이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 ※ 부대시설 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집기는 카탈로그 및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 홈페이지(https://www.i-park.com/hohyeoncentral) 이미지에 구현된 것과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 ※ 단지별로 시공되는 부대복리시설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 홈페이지(https://www.i-park.com/hohyeoncentral) 견본주택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
2.7m	지하 1층 2.7m, 지하 2층 2.3m

### 내진설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3항

구분	등급
내진능력(MMI등급)	VII−0.197g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5-101-0002600 호	₩ 73,407,320,000 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sup>※</sup>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 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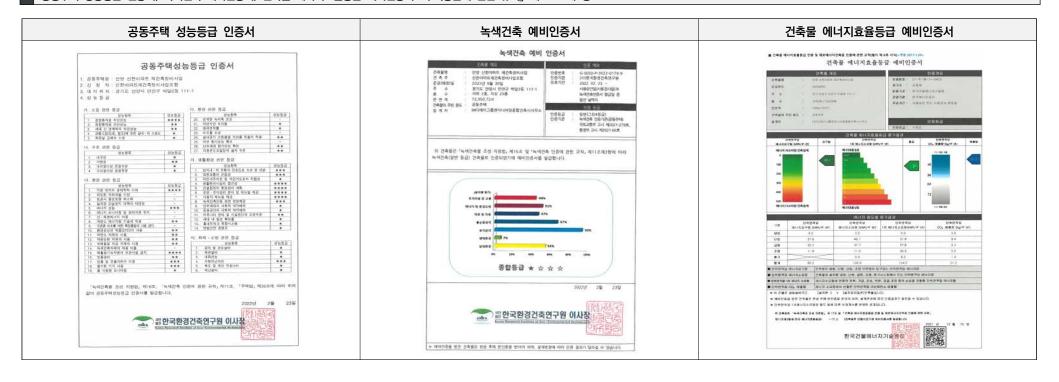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추가 선택품목(옵션)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공급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공급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합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66-9009)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건축부문설계기준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제7조제2항제1호)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다목)	_	지역난방 적용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기계부문설계기준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제7조제2항제2호)	고효율 난방,급탕 및 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절수형 설비설치(바목)	적용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내 실별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전기부문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 설치

###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정보통신
회사명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원포비스㈜	대현종합기술㈜
감리금액	1,887,592,300원	627,019,236원	671,000,000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b>상호</b> 신한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130, 2층(박달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법인등록번호 134171-0011774		110111-6740008

# 견본주택 및 사업지 위치도



■ 견본주택 위치: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1-1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

■ 사업지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박달2동 111-1번지 일원

■ 홈페이지 주소: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 (https://www.i-park.com/hohyeoncentral)

■ 분양문의: 02-898-5007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